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53
----------	-------

발의연월일 : 2026. 2. 6.

발 의 자 : 김선교·김상훈·최보운
이현승·박덕흠·구자근
김위상·윤상현·최수진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명시적 의무는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학생의 학칙 위반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해당 학칙의 존재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년도 시작 전, 학칙 개정 시 해당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칙 안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교와 보호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정한다”를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안내의 시기·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칙의 내용을 매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학칙을 개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 전까지 개정된 내용을 추가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를 “시·도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학교 규칙) ① (생 략)	제8조(학교 규칙) ① (현행과 같 음)
<u><신 설></u>	<u>② 학교의 장은 학칙의 내용을 매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 지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하 여야 한다. 다만, 학칙을 개정 하는 때에는 그 시행 전까지 개정된 내용을 추가로 안내하 여야 한다.</u>
<u>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 ·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 -----</u> <u>-----정하고, 제2항에 따른 안내의 시기 · 방법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 로, 공립 ·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 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 다.</u>
제10조(수업료 등) ① (생 략)	제10조(수업료 등) ① (현행과 같 음)
<u>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u>	<u>② -----</u>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공립·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u>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u>시·도의</u>-----. ----- ----- -----.
---	---